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2019. 10. 11.

개정 2020. 09.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방향) ①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창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의미한다.

② 연구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선정과 연구성과의 활용 등 연구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가치를 고려한다.
2. 환자에게 적합하고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위한 의료기술을 규명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창출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3. 사업단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별(국민,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맞춤형 연구결과를 제공하며, 주요 연구성과는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다.

③ 동 연구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위원회가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부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1.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2.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생성연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술”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진료행위,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등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활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3.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이 속해 있거나 구성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4. “사업단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단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사업단 세부연구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하여 사업단의 외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7. “사업단 세부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이란 동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과제가 집합적으로 구성된 사업 단위를 말한다.
8. “세부연구기관”이란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사업단과의

총괄협약, 사업단의 평가 및 예산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기본 사업계획과 연도별 운영계획
2. 사업단장 선정 계획(안)
3. 연구주제 수요조사의 계획, 연구지원 우선순위 및 세부과제 공모 시행계획
4.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제20조, 제22조에 따른 세부과제 평가 계획과 평가결과
5. 연구 성과물의 홍보·확산 및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 계획
6. 사업단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7.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서
8.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제도 개선, 정책 제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변경한다.

1. 당연직 7인(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장급 각 1인,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급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이사 또는 본부장 각 1인)

2. 환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3.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 주요 유관 학회가 추천하는 자 및 전문가 9인
4. 사업단장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된 기관에서의 직책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안전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회의 안전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을 사전 심층 검토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단의 조직과 기능

제7조(사업단) 사업단은 사업단장, 사무국, 운영협의체, 평가위원회, 세부사업

책임자,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 조직 구성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8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단, [별표1]의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의 기본 사업계획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 수요조사 시행 및 연구지원 우선순위안, 세부과제 공모 시행계획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회, 운영협의체, 자문그룹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세부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연구결과의 검토·보고, 정산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 성과물의 홍보·확산 및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사무국 조직 직원의 지휘·감독과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연구사업의 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사업단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정책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세부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책임급(부교수급) 이상의 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협의체)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확산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사업단의 업무에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주제의 수요조사
2. 사업 간 중복분야 조정 및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3. 연구사업 성과 활용 및 확산
4. 기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연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기타 관련된 기관

④ 위원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된 기관에서의 직책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운영협의체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한다.

⑥ 사업단장은 운영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관리, 일정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수요조사, 성과조사 및 분석 지원
2. 운영위원회, 자문그룹, 평가위원회 등 운영 지원

3. 연구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지원

4. 기타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과제의 선정·중간·최종평가 및 과제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세부과제 선정·중간·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4. 기타 세부과제 평가 및 과제관리에 관한 것으로써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전반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위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서면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업별 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⑨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⑩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해당 과제 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안건

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업별 책임자) ① 사업단장은 세부사업별 과제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세부사업별 책임자 PM(Project Manager)를 둔다.

② 세부사업별 책임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의 검토 및 세부내용 보완
2. 연도별 세부사업별 연구과제의 추진방향 기획
3. 기타 세부사업별 과제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문그룹)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술 또는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관리

제14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연구수행능력·경영관리능력·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 연구·운영계획을 평가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단장을 확정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2]의 사업단장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단장을 선정한다.

제15조(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확정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외부에서 영입된 관계전문가인 경우 성실한 사업관리를 조건으로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장 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의 겸직 및 참여가 불가하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전용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단의 점검·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단의 업무를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에 대하여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단의 중간·최종평가) ① 사업단의 중간(연차·단계) 및 최종평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을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의 연구실적과 목표달성도를 심층분석한 성과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활용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불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세부과제 선정·관리

제19조(수요조사 및 공모)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공모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주제 설정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
2. 임상현장 전문가
3.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4. 일반국민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와 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주제 우선순위 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주제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의 연구주제 우선순위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과제 공모 시행 계획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해당 공모 시행계획은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세부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연구설계 포함)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8. 연구개발비 명세서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제20조(세부과제 선정) ① 사업단장은 공모기간 접수된 세부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단 자체 세부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선정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세부과제 선정을 위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이하 “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추진한다.

③ 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과제를 선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과제의 점검·관리)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세부과제를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2조(세부과제 중간·최종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자체 세부과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세부과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중간평가는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세부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세부과제 평가를 위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과제 협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평가결과 및 차년도 운영 계획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 단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감사보고서)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 촉진을 위해서 세부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6조(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계획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은 소관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결과를 상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전문기관 및 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른 임기는 2019년 6월 13일부터 기산한다.

[별표1]

사업단 업무별 전문기관의 장 승인 및 보고사항

업무구분	세부 구분	내용	승인/보고
사업단 운영	제규정	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사업단장	사업단장 선정 이후, 타 사업 참여사항	승인
		사업단 특성에 따른 사업단장 인건비 계상 관련 사항	승인
	연구협력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보고
	운영비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결산	사업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업운영계획		사업단 연도별 운영계획(안)	승인
세부과제 평가	평가계획	평가계획(안)	승인
		과제평가단 구성(선정평가에 한함)	승인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세부과제 관리	협약변경	협약변경 처리 결과	보고
	성과	사업단 성과 홍보 전 해당 내용 보고	보고
	제재요청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제재조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진흥원은 보고된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함	보고

사업단장의 선정 기준

서면·구두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사업단장 역량 (45)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15) ▶ 사업단장은 연구업적, 교육 및 경력 면에서 훈련된 해당분야 연구자로서 본 사업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사업단장 연구실적의 탁월성 및 우수성(10) ▶ 사업단장의 해당분야 연구실적은 탁월하며 우수한가?
	사업단장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10) ▶ 사업단장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사업단장의 연구사업 기획·관리 경험 및 능력(10) ▶ 사업단장의 연구 사업을 기획·관리한 경험이 본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가?
사업단 운영계획 (45)	사업단 운영 방향의 적절성(10) ▶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비전 및 핵심성공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사업단 구성 및 경영계획의 적절성(15) ▶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경영계획이 사업단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연구목표의 타당성(10) ▶ 연구개발의 비전 및 미션이 타당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추진전략의 적절성(10) ▶ 사업단의 연차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주관기관 지원계획 (10)	주관기관의 사업단장에 대한 활동성 보장 정도(5) ▶ 기관장의 사업단장에 대한 기관내 행정적 독립성 보장이지가 확고한가?
	주관기관의 연구지원 환경의 적절성(5) ▶ 사업단 전용공간지원, 연구인력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